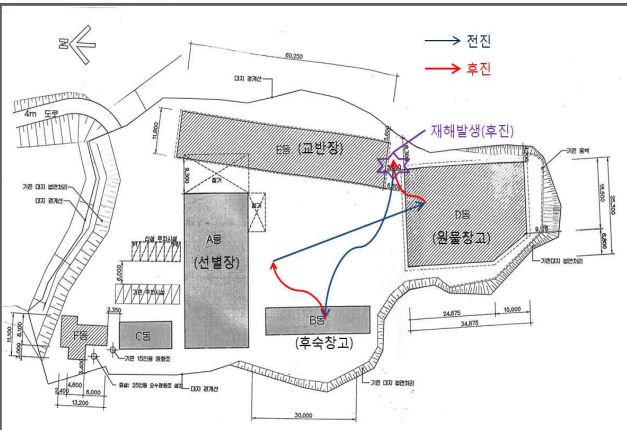


후진하던 로더바퀴에 염착·사망

재해 개요

2017.3.8(수) 경북 안동 소재 사업장 내 원물창고와 교반장 사이로 이동 중 후진하던 페이로더(≒23Ton)바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.

재해 관련 사진



< 재해발생 상황도 >

재해 발생 원인

○ 무자격자에 의한 페이로더 운전

- 자체중량 2톤 이상인 로더는 건설기계조종 면허를 받은 자로 하여금 조종하도록 하여야 하나, 무자격자가 운전함.

○ 페이로더의 운반 작업시, 운행경로 내 출입 제한 미 실시

-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, 해당 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의 상해위험이 있는 장소로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나, 운행경로 내로 출입함.

○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미 작성

- 차량계 건설기계인 로더를 사용 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,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,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음.

동종재해 예방대책

○ 유자격자에 의한 페이로더 운전

- 타이어식으로 적재 장치를 가진 제체중량 2톤 이상인 로더는 건설기계조종 면허를 받은 자가 운전토록 조치하여야 함.

○ 페이로더의 운반 작업시 운행경로 내 출입 제한

-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러하지 못할 시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함.

○ 작업계획서 작성

- 차량계 건설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, 로더의 종류 및 성능을 포함하고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기술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리고,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조치하여야 함.